

공유재산 공가(폐가)철거 공고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에 따라 공유재산 내 무단으로 방치된 공가(폐가)의 시설물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. 공고제목 : 공유재산 공가(폐가)건물의 시설물 및 폐기물 철거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 03. 02. ~ 2020. 04. 03.(1개월간)
3. 공고내역

대상	물건지 주소	공고대상	비고
공유재산	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74-10, 11 내 공가(폐가)	공가(폐가)의 소유주	

4. 공고의 효력

평택시 평택동 274-10,11 내 공가(폐가)의 소유주께서는 위 공고기간까지 평택시청 도로사업과(☎031-8024-4793)에 방문 및 통보를 하시어 소유건물의 안전관리 및 폐기물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상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
공가(폐가)철거 후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 제2항 「행정대집행법」및 제81조(변상금의 징수) 에 따라 원상복구 (시설물 철거)등의 비용 및 최근 5년간의 변상금(대부료의 120%)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03. 02.

평택시

